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66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김기표 · 문진석 · 한민수
이주희 · 박수현 · 최혁진
송재봉 · 이성윤 · 권칠승
맹성규 · 김남희 · 박상혁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적 주문형태로는 합헌적 법질서의 원활한 회복, 실효적인 기본권의 구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법형성권의 존중 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주류적 견해는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원은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을 부인해 왔고, 이로 인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이 부분적, 한정적으로 위헌인 경우에도 위헌인 부분을 넘어 법률 조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함.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입법형성권 존중 등을 위하여,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

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법 제45조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안 제45조),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결정유형의 기속력 등 효력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을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률의 위헌결정은”을 “법률의 위헌 결정(헌법불합치 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u>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u>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 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위헌결정의 범위) ----- -- <u>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 헌 여부를</u> -----. ----- ----- ----- ----- ----- -----.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u>법 률의 위헌결정은</u> 법원과 그 밖 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를 기속(羈束)한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u>법 률의 위헌 결정(헌법불합치결 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 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은</u>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